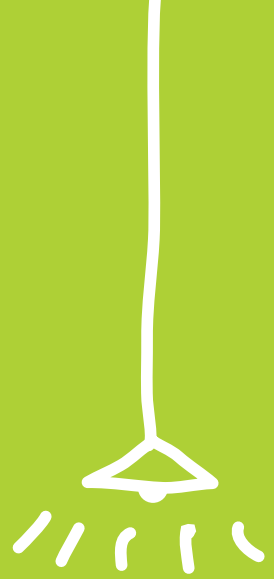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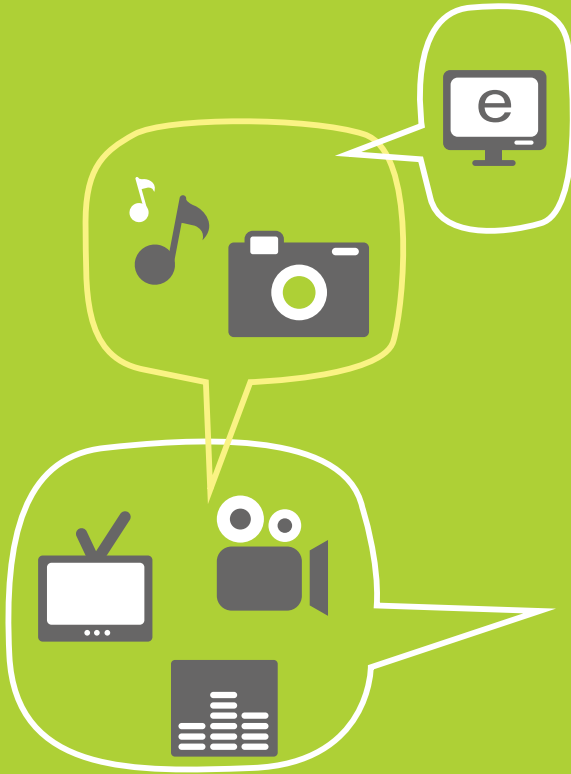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음악·영상물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이 크게 높아진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뉴스기사'는 지식기반사회의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콘텐츠 중 하나임에도 '공짜'라는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이 힘들여 생산한 '저작물'인 '뉴스기사'가 잘 몰라서 혹은 무심결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복사·배포되면 뉴스 콘텐츠의 생산기반과 창작의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자에는 인터넷에서의 뉴스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Contents

* 저작권법 개요	2
I. 뉴스 저작권이란?	6
1. 뉴스 저작물의 개념	
2.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3. 뉴스 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II. 이런 경우가 뉴스 저작권 침해	10
III.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14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 (참고자료 1)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 (참고자료 2) 뉴스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2. 뉴스 저작물 구매를 통한 활용사례	
• (참고자료 3) 뉴스 저작물 이용 문의처	
IV. 자주 묻는 뉴스 이용 방법 Q&A	24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법 개요

▣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저작물 개요

■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물의 종류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악도·모형·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

■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개요

▣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 (예를 들어, 납본이나 등록 등) 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자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50년
-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공동저작물 :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2013. 7. 1일부터 50년 → 70년

■ 저작자의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 *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습니다. 예컨대,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추정을 받으며, 등록된 창작연원일 또는 공표연원일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 *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침해 행위에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저작재산권의 양도 출판권의 실정 및 양도 등에 있어서는 등록된 자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채권양도의 통지가 갖는 효력과 유사합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되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서 혹은 무심결에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뉴스는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창작 노력이 배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 뉴스 저작권이란?

1. 뉴스 저작물의 개념

뉴스 저작물이란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언론사 기사가 촬영한 '보도사진'은 '사진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방송뉴스 등에서 기사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은 '음악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방송·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I. 뉴스 저작권이란?

2. 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사의 ‘창작물’로 무단 복사·배포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와 보도사진은 일반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뉴스 저작물도 음악·영화·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뉴스 저작권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무단복사·재배포가 손쉬워지면서 기업·기관·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실’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뉴스기사 중 ‘부고, 인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3. 뉴스 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저작권 준수는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접하는 뉴스이지만 여기에도 누군가의 창작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가 취재, 기사작성, 편집 등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양질의 뉴스 정보로 재생산됩니다.

언론사가 힘들여 만든 뉴스 저작물들이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값을 받고 이용되어야 재투자를 통한 양질의 뉴스기사 생산이 가능합니다.

언론산업의 기반을 유지합니다.

뉴스 이용자가 뉴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할 때,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일 경우라도.... 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뉴스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의 소속 언론사에 있으므로 뉴스 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언론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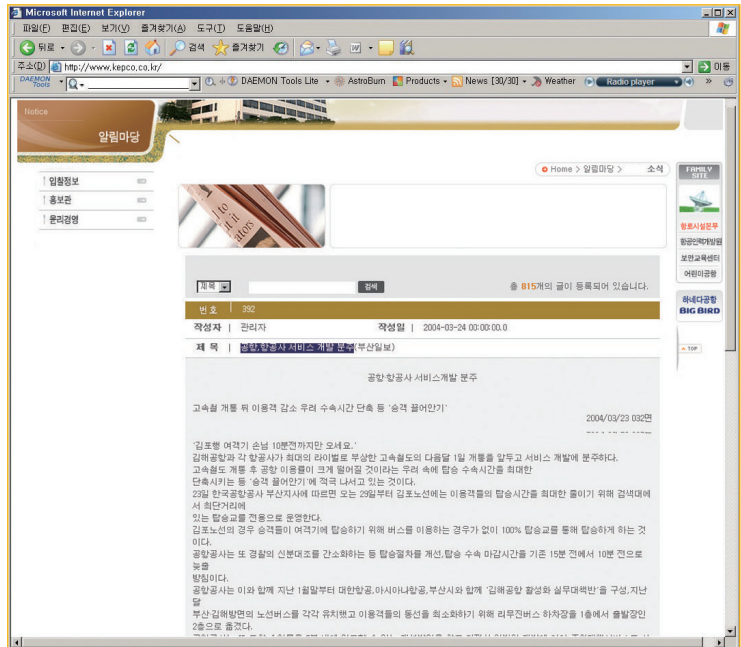


II. 이런 경우가 뉴스 저작권 침해

뉴스 저작물의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1)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합니다.



II. 이런 경우가 뉴스 저작권 침해

뉴스를 모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2)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사내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게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입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3)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공공이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 편집한 것을 이메일 등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개인 블로그, 카페에 뉴스를 허락 없이 올리는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4)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 나 '인터넷 카페' 일지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올리거나 그것을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료 지불과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뉴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적극적인 이용 활성화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저작물의 경우도 이용 시 저작권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통념상 정당한 범위에서는
저작권료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Ⅲ .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뉴스기사는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가 기자에 의한 별도의 창작 노력 없이 그대로 기사화된 경우에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뉴스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예외조항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저작물의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언론사의 허락 없이도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인용' 요건〉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시할 것.

III.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홈페이지 · 블로그 등에 뉴스를 게재할 때는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단순링크' 방식의 이용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전문적으로 뉴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은 블로그 · 카페 등에서 뉴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참고자료1

● 합법
● 불법

링크방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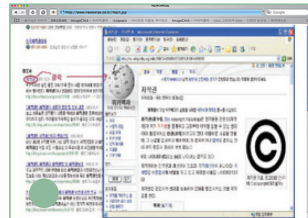
단순링크
(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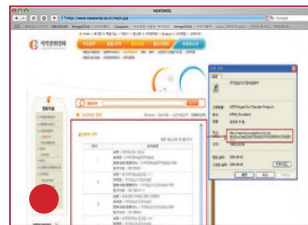
직접링크
(Deep Link)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링크
(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 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 상기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견본입니다.

III.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뉴스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YES → NO →

뉴스기사의 이용형식
 ...어떤 형태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가



...뉴스기사 전문(全文)을 사용하는가?

NO →

YES ↓

**뉴스기사가 현재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확인**
 ...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
 ... 보호기간 내에 있는가?

NO →

YES ↓

**뉴스기사의 내용 및 이용 형태가
 저작권 침해 대상인지 확인**
 ...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가?
 ... 초·중·고등학교 '수업 목적'인가?
 ... 날씨, 동정 등 창작성이 없는 단순 사실 보도인가?

YES →

NO ↓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 저작권자(언론사)
 ... 저작권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

YES →

참고자료2

인터넷상에서의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

YES ↓

이
 용

뉴스 기사를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III.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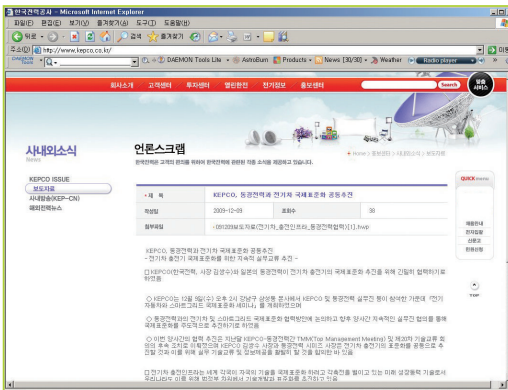
2. 뉴스 저작물 구매를 통한 활용 사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뉴스기사 게재용 뉴스 상품 구입

활용사례 (1)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뉴스기사 전문'을 게재하여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체에서 고객 서비스와 내부 직원의 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뉴스 이용 방식입니다.



방대한 뉴스를 지면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이용

활용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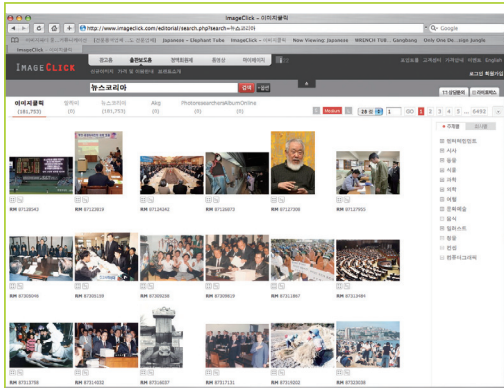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뉴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지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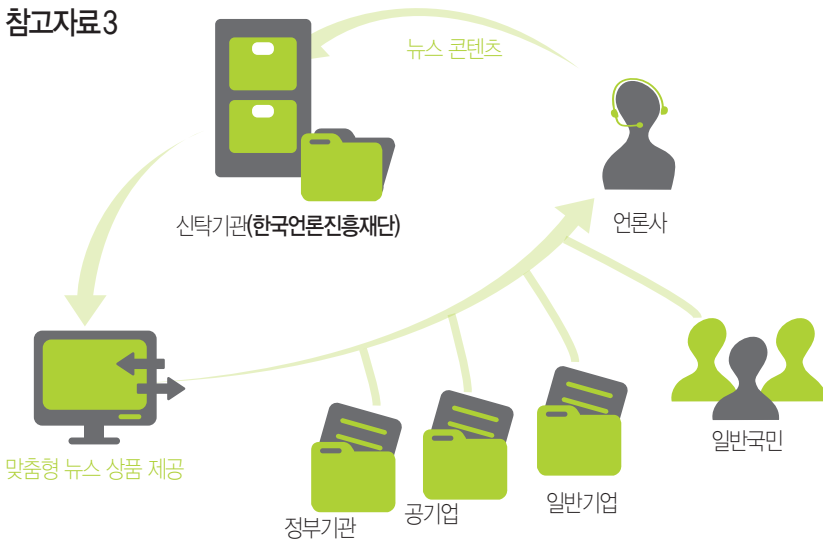
홍보물·출판물 제작 등을 위한 '보도사진' 구입 활용

활용사례(3)

주요 취재 현장의 생동감 있는 언론사 '보도사진'이 각종 홍보물과 출판물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교과서에도 현장감 있는 교육 자료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III.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뉴스 저작물 이용 문의처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전화 : 02-2001-7791~5 이메일 : dnc@kpf.or.kr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0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뉴스 저작물에 대한 신탁 관리업을 허가 받아 '뉴스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뉴스 저작권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말 현재 82개 매체의 뉴스 저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대신해 연간 1,100여 개 뉴스 사용 기관 및 개인에게 뉴스 콘텐츠를 유통·공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저작권 사업 참여 언론사 목록

구분	매체사	매체수
전국종합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
지역종합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29
경제지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8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스포츠칸, 스포츠한국,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	5
영자지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지	환경일보,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3
주간지	머니위크, 이코노미리뷰, 중앙선데이,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6
지역주간지	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평택문화신문, 홍성신문	5
인터넷신문	대덕넷, BreakNews, 이데일리, 데일리안, EBN산업뉴스, 스투닷컴, 노컷뉴스, 뉴스핌	8
어린이신문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3
무료신문	AM7	1
계		82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은 언론사의 뉴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개별 문의를 통해 뉴스 이용 방법을 안내 받아야 합니다.

“ Q & A만 잘 숙지해도 뉴스 저작권 침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작권자의 창작 노력을 보호하는
뉴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이 이루어질 때
선진 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없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희망찬 미래가 약속됩니다.



IV. 자주 묻는 뉴스 이용 방법 Q & A

Q 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A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물 동정 소개나 부음 기사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의성이 인정되는 일반 보도 기사는 창의성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단순한 사실 보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Q 기사를 편집한 후 출처를 명시하여 게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까?

A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은 물론 특정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목적에 맞게 기사를 편집해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사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기사의 ‘무단가공’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19쪽 <저작물 ‘인용’ 요건> 참조

IV. 자주 묻는 뉴스 이용 방법 Q & A

Q 우리 기관 관련 뉴스이거나 기관장 인터뷰 기사를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올려놓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우리 기관 관련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이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지 있지 않다면(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편집만 했다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기사에서 기관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기관장의 발언 부분만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사를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뉴스기사의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기자의 동의를 구하면 합법 아닌가요?

A

뉴스기사의 저작권자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아닌, 기자의 소속 언론사이므로 뉴스 기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언론사의 공식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Q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A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IV. 자주 묻는 뉴스 이용 방법 Q & A

Q

뉴스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뉴스 저작권은 어떤 근거에 의해 보호를 받나요?

A
뉴스 저작물은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의 저작물 분류에 의하면 문자에 의한 일반적인 뉴스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에 속합니다. 아울러 보도사진은 사진 저작물에 속하며 최근 사진기사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동영상물은 영상 저작물에 포함됩니다. 뉴스 저작물은 주로 3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뉴스 저작권이 잘 보호될 때
문화 선진국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뉴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상의하십시오!

전 화 : 02-2001-7791~5
이메일 : dnc@kpf.or.kr
www.newskorea.or.kr





뉴스를 사용할 때는
뉴스 저작권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